

② 2005.12.26.자 05진인3941 결정[과잉진압에 의한 인권침해]

검찰총장에게 전○○, 흥○○의 시위 중 경찰진압에 의한 사망과 관련해서 수사를 개시할 것을 의뢰하고, 경찰청장에게 2005.11.15. 전국농민대회와 관련하여 과잉진압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청고한 사례

【결정요지】

1. 진정요지

[1] 전○○, 흥○○의 사망과 관련해서 피해자의 사인과 그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생명미상의 대원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나 행위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개시할 것을 의뢰 [2] 경찰장구 사용 관련 지침이나 자체규정에 위배하여 방패로 안면이나 머리 부분을 가격하거나, 날을 세워서 가격하거나, 단순가담자나 저항을 포기하는 자들에게도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여성이나 노약자들에 대한 보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경찰장구 사용 관련 제반 지침에 위반하여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경찰청에 게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참조결정】 국가인권위원회 2005.2.14. 03진인6400, 03진인6412, 04진인6, 04진인2696 병합결정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과잉진압 및 폭력 행위 관련
(7) 사건 당일 농민시위는 사건에 쇠파이프·각목 2,000여개·풀무나무 200여개를 준비하고 이를 반입하여 폭력시위 도구로 사용하였고, 화염병 투척·투석 및 차량방화 등으로 경찰관 218명이 부상하고, 차량 19대가 파손되는 등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었다.

○○, 같은 청 경비부장 ○○○을 각 경고하고, 같은 청 기동단장 ○○○를 징계하고, 각 격대장, 중대장 등 지휘책임자, 실제 가혹행위를 행한 부대원들에 대해서는 경찰청 자체 조사 후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피진정인들은 2005.11.15(화) 16:00경부터 ○○○ 문학공원에서 개최된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전국농민대회'를 마치고 시위에 참가한 시위대를 헤기. 시위 현장에 배치된 경찰들이 시위참가자들에게 방패를 세워 가격하고, 부상자를 후송하는 사람을 때렸으며, 노인, 여성 등 폭력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다수의 시위참가자에게 부상을 입혔고, 나. 성명미상의 전투경찰은 피해자 전○○을 방패로 가격하고 곤봉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 두부를 손상케 하여 2005.11.24일 사망하게 하였으며, 다. 성명미상의 전투경찰은 피해자 흥○○를 방패로 가격하여 현장에서 쓰러지게 하였고 흥○○는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05.12. 18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3. 담당인

【진정인】 문○○(전국농민대회총연맹 의장)
【피해자】 고 전○○, 고 흥○○ 외 다수
【피진정인】 경찰총장 외 관련자
【주 문】 1. 경찰총장에게 전○○, 흥○○의 사망과 관련해서 사망원인, 가해자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개시할 것을 의뢰한다.
2. 경찰청장에게 2005.11.15. 전국농민대회와 관련하여 과잉진압에 책임이 있는 ○○지방경찰청장 ○○○, 같은 청 차장 ○

(4) 이런 국한적 상황에서 생명에 위협을 느낀 일부 대원들이 방어적 차원에서 경찰봉이나 방패를 다소 과도하게 사용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나, 농민대회의 전체적인 불법상황을 고려할 때 경찰의 행위가 정당한 공권력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전○○ 농민 사망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 ○○대 병원, ○○○ 병원 의사 진술 등에 의하면 사인은 전도에 의한 두부손상이나 손상의 형성원인을 단정하기 어렵고,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착용한 마스크 및 옷의 상태가 깨끗하여 빨로 묻혔다고 보기 어렵지만 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경찰의 적절적인 가격으로 인하여 뇌손상을 입고 사망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흥타표 농민 사망 관련

사건 당일 17:00부터 약 15분간 문화마당 6문 앞 ○○○ 공사현장 주변에서 시위대와 진압부대 사이에 격렬한 공방이 있었는바, 피해자의 미간·인중·열상 등 안면부 상처 흔적으로 볼 때 진압부대가 방화 및 투석을 하는 시위대를 밀어내며 문화마당 화단 내로 도망가는 일부 시위대를 뒤따라 진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방폐에 가격당하거나 넘어져서 부상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3. 과잉 진압 및 폭력행사 관련

가. 시위 개요 및 피해 현황

2005.11.15. 시위 진행 경과에 대해 ○○지방경찰청 등이 제출한 집회상황 보고 기록, 범대위 진상조사단 제출 보고서 기재 내용, KBS, SBS 등 언론 취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국회의 쌀협상안 비준 저지를 목적으로 벼 스 345대를 이용,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농민 1만여 명이 예의도에 모여 시위를 하였으며 당일 시위 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1) 시위 경과			
시간대	장소	상황 개요	
13:40~16:00경 (4차·진압)	○○○ 공원 문화 마당 → 국회의 방향 ○○ 운행 앞 차지점	○ 전국농민총연맹 회원 등 1만여명이 「쌀협 상안 비준저지 농민대회」 사전행사 및 대 회 개최 - 시위대 국회의사당 방향으로 행진	
16:00~16:30경 (1차·진압)	○○○ 운행 앞 벽설치지점	○ 시위대가 대미경력에게 깃대, 물푸레나무 등으로 폭력을 행사, 기동대 차량 방화 ○ 16:18경 살수차 살수 시작 ○ 16:21경 차벽 앞으로 경력 진입 및 검거 지시 (기동단장)에 따라 단3(1·2·3 중 대), 청1015·6·13 중대)이 차벽 앞으로 진입, 시위대와 격돌 ○ 진입 경력에 의해 밀려난 시위대는 간헐적 으로 경력들과 대치하며 도주 형태로 밀 려남	
16:30~17:20경 (2차·진압)	○○○ 운행 앞 벽설치지점→ ○○○ 공사장 앞, 예의도 문화 마당 6문	○ 경력들이 밀려나는 시위대를 방폐와 통으 로 가격하는 방향으로 진입 ○ 시위대가 포스코공사장 차벽 차량 방화, 문화마당 6문 입구를 중심으로 보도블럭 투척 등 시위 전개, 경력과 시위대 간혈 적 격돌	
17:20~18:10경 (3차·진압)	○○○ 문화마당	○ 17:20경 (3차 진입) 단3을 선두로 6경대 경력들이 문화마당으로 진입해 간헐적 격 돌, 시위대를 1문 앞까지 밀어내고 6문 방향으로 철수 ○ 6문으로 철수하는 대미경력에게 시위대가 농구풀대를 밀어 넘어뜨리고 쇠파이프 등 으로 경력을 공격하여 6문 밖으로 경력을 이 밀려남	
18:10~18:50경 (4차·진압)	○○○ 문화마당	○ 18:15경 문화마당 내로 진입 및 검거 지 시 (기동단장)에 따라 단3(1·2·3 중대), 청1015·6·13 중대), 청104(50·53· 306중대), 청105(73·74·75 중대)가 6문 에서 문화마당 내로 진입 검거 작전 수 행하여 시위대가 경력에 밀려 무대 및 1 문 쪽으로 이동	

(2) 피해 현황 : 경찰 측 자료에 의하면 농민 113명 부상, 기타 5명 부상으로 나타나 있으나 범국민대책위원회 전상조사단의 1차 진상조사 보고서(2005. 12. 9.)에 의하면 농민 측 부상자 수는 아래 표와 같다.

경찰 측	농민 회 측
○ 부상자 현황 : 총 218명 - 경찰 7명 (중상 1명), 대원 211명 (중상 32명)	○ 부상자 현황 - 현재 치료중이라고 밝힌 농민들의 숫자 만 150여명에 이릅니다. - 현장에서 200명가량이 후송되었고 전국 농민회총연맹에 의하면 전체 600명 가량의 시위대가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물적 피해 : 총 9,500여만원 상당 - 호송용 콤비 2대 소훼, 버스 3대 일부 소훼, 14대 부분 파손 등	○ 부상 이후 사망자 : 2명 (전○○, 홍○○)

나. 기초사실

(1) 시위대는 약 1만 명으로 추산되고, 경찰은 약 9천명(28격대 88중대, 차서 426명 등) 정도가 투입(경기도 경력 30중대 포함)되었다.

(2) 총괄지휘 책임자는 ○○지방경찰청장 치안정감 ○○○이고, 실체 지휘는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 경무관 ○○○이 하였으며(현장에 나가지 않고 서울을 지방경찰청 청사내 9층 대책실에서 CC TV를 보면서 무선으로 지시), 현장지휘 책임자는 서울지방경찰청 치안감 ○○○이고,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관 ○○○가 실제로 현장에서 경력지휘를 하였다.

(3) 경비부장과 기동단장은 동일 직급(모두 경무관)이지만 각각 ○○○지방경찰청장과 차장을 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동단장은 경비부장과 기동단장의 차라 현장지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구체적 상황조치에 대해서는 현장지휘 책임자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되고 있다.

(4) 각 격대장(3개 중대로 구성)들은 기동단장의 지시에 따라 경력을 움직이고, 각 중대장들은 격대장의 지시에 따라 경력을 움직이며 대책실에서 경비부장이 직접 격대장들에게 지시를 내리기도 하지만 경비부장과 기동단장의 지시가 상충할 경우 격대장들은 현장에서 지휘를 하는 기동단장의 지시를 우선하여 따른다.

(5) 16:00경부터 일부 시위대가 경력폭행, 차량순파, 방화 등의 행위를 하자 시위대 점거지시 및 검거독려를 하였고(경비부장, 기동단장), 17:00경부터 18:00까지 시위대가 이동식 농구대를 밀어 쓰러뜨리는 등 격렬한 충돌이 벌어져

많은 경력들이 부상을 당한 후 더욱 강도 높은 점거 지시가 있었으나 18:00까지 점거실적이 거의 없었다.

(6) 일몰(당일은 17:21분) 후 18:00경부터는 시위대가 대부분 문화마당에 집결해 있었으며,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18:00부터 18:30사이에 있었던 교신내용을 기록한 무선기록에 따르면 경비부처는 “대원들이 문화마당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시위대를 문화마당에 두고 관리만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를 어기고 경력들이 문화마당으로 진입하자 “빨리 경력을 문화마당 밖으로 빼라”며 화를 내는 등 경력들의 문화마당 진입을 금지하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다.

(7) 반면에 동일시간대 무선기록에 따르면, 기동단장은 기동단 경비과장, 특기대장, 1기동대장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경력을 밀고 나가 시위대를 점거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 지시에 따라 기동단 경비과장 등이 경력을 문화마당 새로 진출시킨 사실을 알 수 있다.

(8) 무선녹취록에 나타난 각 격대장들의 보고에 따르면 18:20경부터 1기동대 5명, 4기동대 2명, 3기동대 3명 등 10여명의 시위대를 현장에서 점거하였다.

다. 판단

2005. 11. 15. 14:00경부터 농민 1만 여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 ‘故정○○ 추모제 및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하면서 사전에 준비한 각목 등을 반입하여 16:10 경부터 경력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일부 시위대가 돌 투척, 경찰버스 방화를 하였고, 17:40경에는 문화마당 6문 근처에서 이동식 농구대를 밀어 넘어뜨려서 경찰 218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시위대의 폭력행사 부분은 경찰에서 총 63명에 대하여 수사(구속9, 불구속 47, 체포영장 3, 출석요구 4)를 진행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경찰의 장구사용의 한계일탈, 과잉진압 부분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1) 시위진압 및 경찰장구사용 관련 규정

(7)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경찰청훈령 제461호)」 제87조 경찰관은 불법집회의 경우 지속적인 경고로 불법성을 지적하여 자발적인 해산을 유도하고 경제해산시에는 필요 청소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야 하고, 이러한 물리력을 사용할 때 장애인, 노약자, 아동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6601호)」 제3조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다) 「경찰장비관리규칙(경찰청훈령 제377호)」 제91조 제5항 직무수행을 위해 위해성 장비인 방폐를 사용할 때는 “모서리 등이 파손된 날카로운 방폐가 사용되거나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방폐 모서리로 상대의 머리 등 중 요부위를 찍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진압봉의 경우 손상 등으로 날카롭게 된 진압봉을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할 것과, 시위대의 머리·얼굴을 직접 가격하지 않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과도한 경찰장비 사용 및 과잉진압 여부

(가) 경찰장비 사용 관련 규정 및 집회시위 현장 인권보호 강조 지시(2005.4.30,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에 따르면, 방폐의 경우 방폐날을 세우거나(버스듬하게 드는 행위) 위에서 내리찍는 행위를 일체 금하고 있고, 방폐로 밀어내는 경우에도 봄통부위를 대상으로 하고 안면부에 부딪히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 하며, 진압봉의 경우에도 위에서 내려쳐 공격하는 일이 없도록 하 고, 하퇴부를 가격하여 체압하도록 하며, 노약자나 어린이 보호에 유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사건 당일 현장을 촬영한 각종 언론사 영상자료, 피해자 진술 등 일간 자료에 의하면 전 앙대원들이 방폐를 엎으로 휘두르거나 방폐를 들어올려 수평으로 세워서 시위대를 가격하는 등 방폐를 뱉어용으로 사용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공격용으로 사용한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고, 특히 목 이상의 안면부나 뒷머리를 가격당한 부상자가 다수(부상자 중 80여명)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단순가담자나 저항을 포기하고 도주하거나 쓰러진 사람들에 대하여 발길질을 하거나 방폐와 곤봉을 이용하여 공격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공원 문화마당 내에 설치된 분무대 앞에서 다친 농민들의 임시 응급처치 등 목적으로 대기하고 있던 여성 및 노인들을 방폐로 가격하는 행위가 있었는바, 경찰장비 및 물리력의 과잉행사 사실이 인정된다.

(다) 집회시위 현장 인권보호 강조 지시(2005.4.30, 서울지방경찰청장) ‘해 산점거 시 안전수칙 적법절차 준수’에 따르면, 해산대상 집회라 하더라도 주최자에게 종결선언 요청을 하고, 자진해산 요청을 하고 이를 듣지 아니할 경우 3 회 이상 해산명령을 내린 후에야 직접해산을 실행에 옮기도록 지시하고 있으 며, 해산·점거시 안전사고가 우려될 경우 강제해산을 자제하고 철저한 채증으 로 사후 사법조치를 하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려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당일 18:00 이후 문화마당에 접경해 있는 시위대에 대하여 당시 현장에서 경력을 지휘하던 기동단장은 ○○청 경비부장의 문화마당 진입 금지 방침에도

따르지 아니하고, 해산절차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시위대 겹거북적으로 경력을 투입하였음을 알 수 있고,

(b) 통상 검거 시에는 극렬시위대를 일반시위대와 분리·고착한 후 시위대 1명당 3명, 내지 4명의 경력으로 사전 검거조를 편성하여 체포하되 별길질, 구타 등 폭력을 수반한 검거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경력들을 문화마당 6명 쪽에 형으로 짐결시킨 후 일제히 밀고 나가도록 하였는바, 해산목적 이었다면 위압을 보이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문화마당에서 밀어내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체포를 하려다 보니 우선 진행방향에 있는 시위대에 대하여는 단순가담자인지, 노약자인지 등에 대한 구별 없이 무조건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고, 횡으로 어느 정도 대열을 갖추어 달려 나가면서 체포할 경우 체포원칙에 따른 체포는 사실상 어렵고 물리력 행사의 수위조절도 어려워 사고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경찰의 행위가 정당한 공권력의 한계를 넘지 않았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경찰의 과잉진압 사실이 인정된다.

4. 전○○ 농민 사망 관련

가. 기초사실

(1) 피해자 故전○○(이하 전○○이라 함)은 2005.11.15. 10:10경 ○○시 ○○면 지역 충무 이○○ 등과 함께 ○○시 ○○면을 출발, 같은 날 13:30경 전국농민대회 본 대회장인 ○○○ 문화마당에 도착하였다.

(2) ○○경찰서 소속 ○○○ 경장은 같은 날 18:18 경 문화마당 내 국가개양 대에서 국회방향으로 약 10-20 미터 지점에서 전○○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장면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였다.

(3) 전국농민대회 참석자인 장○○는 배○, 정○○, 김○○ 등과 함께 쓰러져 있는 전○○에게 다가간 후 같은 날 18:19~20경 자신의 핸드폰으로 119에 2회 전화를 하여 구급차를 요청하였다.

(4) 위 배○, 정○○, 김○○ 외 생명미상의 1인은 같은 날 18:27경 의식을 잃고 있던 전○○을 문화마당 내 1문 입구에 설치된 농민집회 무대 뒤쪽으로 옮겼다.

(5) 전국농민대회 참석자인 김○○는 같은 날 19:00경 여의도 문화마당 1문

밖 ○○증권 건물 앞 가로수 앞에 설치된 난간을 잡고 앉아 있는 전○○을 발견하고 전○○의 허리를 부축하여 금융감독원 옆에 주차되어 있는 버스에 태웠고, 전○○은 같은 날 21:00경 버스를 타고 여의도를 떠났다.

(6) 위 이○○과 ○○면 청년회장 김○○은 2005.11.17. 17:00경 ○○면 소재 청년회관에서 전○○에게 식사를 제공하던 중 17:30경 전○○이 바지에 오줌을 쌔는 것을 목격하고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동인을 충남 ○○면 ○○동 소재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7) 위 이○○ 등이 같은 날 19:52경 전○○을 데리고 위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동 병원 응급실 담당 의사 칙○○은 전○○이 시위도중 경찰통에 머리를 맞아 머리를 다쳤다는 이○○ 등의 말을 듣고 방사선과에 의뢰하여 씨티(CT) 촬영을 한 바, 뇌실질출혈 증상이 있어 긴급하게 수술을 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하고, 같은 병원 신경외과 주치의인 죄○○에게 연락하였고, 위 죄○○는 같은 날 20:40 경 씨티촬영 결과 등을 확인하고 간단하게 전○○의 상태를 살핀 후 응급환자로 빨리 수술을 할 필요가 있어 3차 의료기관인 ○○대병원으로 전원시켰다.

(8) 전○○은 같은 날 22:43경 ○○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대병원 신경외과 전공의 이○○ 등은 다음 날 아침에 전○○의 상태를 관찰한바, 의식이 저하되어 수술을 하기로 하고, 같은 날 11:00경 약 1시간 동안 머리에 구멍을 뚫어 피를 빼내는 수술전두술(수술전두술)을 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같은 날 23. 11:00경 다시 두개골절제술(우측 뇌의 뼈를 빼어 내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9) 위 이○○ 등은 수술 후 전○○의 상태를 관찰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같은 날 24. 새벽에 위 사실을 전○○의 가족 등에게 통지하였고, 동인들은 같은 날 05:30경 ○○대병원에서 전○○을 퇴원시켰고, 전○○은 집으로 이동 중 같은 날 06:30경 사망하였다.

(10) ○○경찰서장은 2005.11.24.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라 함)에 사인규명을 위해 전○○의 사체에 대해 부검을 의뢰하였고, 국과수 중부분소 법의학과 이○○ 등은 같은 날 19:00경 유족 1인, 농민회에서 추천한 내과전문의 원○○, 농민회 소속 3인 침관 하에 전○○의 사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였다.

(11) 국과수 중부분소 이○○용 등은 2005.11.25. 20:00경 전○○의 사인을 두부손상(Head Injury: 두개골절, 의상성 뇌실질내출혈, 뇌挫상, 경막하출혈 등)으로 판단하고, 두부손상은 왼쪽 후두정부에 외력이 적용한데 반해, 뇌挫상,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등의 뇌손상은 양쪽 전두엽 및 오른쪽 측두엽에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힘이 작용한 동측충격손상(同側衝擊損傷)보다는 힘이 작용한 반대쪽에 형성된 대측충격손상(對側衝擊損傷)이 강하게 형성된 소견이고, 이는 전도, 즉 정지된 물체에 머리가 이동하다가 부딪히는 상황에서 형성된 두부손상이라는 법의학적 전해를 밝혔다.

(12) 부검결과 전○○의 오른쪽 눈 부위에서 6.0×5.0 센티미터 범위의 피하출혈(皮下出血), 왼쪽 눈 부위에서 5.0×3.5 센티미터 범위의 피하출혈, 왼쪽 후두정부(後頭頂部)에서 4.5×3.5센티미터 범위의 가파(痂皮 : 소위 땁지)로 덮혀 있는 표피박탈(表皮剝脫)이 관찰된다.

(13) 오른쪽 전갑부위에서 2.5×1.5, 2.5×1.0 센티미터 크기의 좌상, 오른쪽 가슴 14.0×13.0 센티미터, 왼쪽 가슴 10.0×10.0 센티미터 범위에서 원형 좌상, 흉脯(가슴 가운데) 부위에서 10.0×8.0 센티미터 범위의 좌상, 오른쪽 몸통 측면부(아래쪽 흉곽 부위)에서 1.5×1.0 센티미터 크기의 좌상, 왼쪽 몸통 측면부(아래쪽 흉곽부위)에서 2.0×2.0 센티미터, 1.0×1.0 센티미터 크기의 좌상이 관찰된다.

(14) 오른쪽 팔 위주에 15.0×9.0 센티미터, 왼쪽 팔 위주에 12.0×8.0 센티미터 범위의 각 다수의 원형 좌상, 원쪽 팔 위 바깥 부위에서 11.0×7.5 센티미터 크기의 좌상, 왼쪽 팔꿈치 부위에서 4.5×2.5 센티미터 표피박탈 및 좌상, 1.2×1.2 센티미터 크기의 표피박탈, 왼쪽 허벅지의 앞쪽에서 1.5×1.2 센티미터 크기의 좌상, 원쪽 정강이에서 3.5×2.5 센티미터 크기의 좌상, 오른쪽 정강이에서 3.0×1.5 센티미터 크기의 좌상, 2.5×1.0 센티미터 크기의 좌상, 왼쪽 고관절 부위에서 6.0×4.0 센티미터 크기의 표피박탈이 관찰된다.

(15) 국과수 ○○분소는 전○○의 사체에서 관찰되는 양쪽 눈부위의 피하출혈의 경우 눈 부위에 직접 외력을 사용 하였기보다 전두개와의 충돌에 의한 이차적인 출혈의 이동으로 형성되었고, 양쪽 가슴 및 양쪽 윗팔에서 보는 다수의 원형의 좌상 및 원쪽 허벅지 좌상은 그 위치 및 모양으로 보아 병원에서의 신경학적 검사(통증에 대한 반응 정도 검사)로 인하여 형성된 손상이며, 왼쪽 팔 윗부분 바깥에 형성된 좌상의 경우 병원에서 사용된 혈압측정용 압박대에 의한 손상으로 판단된다.

(16) 또한, 가슴 가운데에 형성된 좌상의 경우 병원에서 실시된 심폐소생술에 의하여 형성된 손상으로 판단하고, 오른쪽 견갑부 좌상, 양쪽 몸통 측면부 좌상, 양쪽 정강이 좌상, 왼쪽 고관절 부위 표피박탈, 왼쪽 팔꿈치 부위 표피박탈, 좌상의 손상은 외력이 적용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를 손상의 경우 외력을 유발한 둔기를 추정할 수 있는 특정한 각인 된 모양을 지니고 있는 정형손상

이 아니므로 어떠한 둔체에 의하여 형성된 것인지 추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나. 전○○의 사인

(1) 전○○의 사인에 대해 국과수는 두부손상(두개골골절,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뇌挫상, 경막하출혈 등, 이하 두부손상이라고 함)이고, 두부손상이 동측충격 손상보다는 대측충격손상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대하여 인도주의사협회(회장 김○○, 인의협이라 함)도 2005.12.7. ‘고 전○○의 사인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국과수의 부검결과에 동의하고 있다.

(2) 다만 전○○의 대측충격손상이 전도에 의해 형성된 두부손상이라는 국과수의 결론에 대해 인의협은 대측충격손상은 외부의 가격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힘이 크지 않는 경우에도 가격 받은 반대편 뼈에 대측충격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대측충격손상의 원인을 전도로 단정하는 국과수의 견해에 반대하고 있다.

(3)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 때 전용철의 사인은 대측충격손상에 의한 두부손상으로 판단된다.

다. 대측충격손상의 원인조사

(1) 진정인의 주장

전○○은 전국농민대회 집회 도중 경찰의 방패와 진압봉으로 머리를 맞아 사망에 이른 것이다.

(2) 피진정인들의 주장

피진정인들은 전국농민대회 당시 방패나 진압봉으로 전○○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전○○의 두부손상 원인에 대해 알 수가 없다.

(3) 조사 결과

(가) 전국농민집회 참석 후 18:00경 까지 전○○의 행적

(a) 전국농민집회 참가자인 임○○은 당일 16:00~16:30경 사이에 문화공원 6번 근처 ○○은행 조조몰 앞에서 전○○을 만났는데, 당시 전○○은 손으로 머릿부분을 만지며 “여기가 좀 아프다.”는 말을 하였고, 외관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출혈 등의 모습은 알아볼 수 없었으며, 머리카락이나 옷매무새 등이 흐트러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b) 전국농민집회 참가자인 박○○은 17:30~18:00경 사이에 문화마당 내에 있는 매점에 들렀다가 전○○을 만났는데, 전○○은 전투경찰들을 보며 “저것들한테 맞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아, 맞는데 이꼴이 났다”고 말했고 전○○이 힘들어 보였지만 말은 정상적으로 하였다고 전술하고 있다.

(c) 경찰청에서 채증한 자료에 의하면 전○○은 16:10경 국회 앞 ○○은행 앞 시위대 무리 속에서 발견되고, 17:35경 문화마당 6문 오른쪽(1문을 볼 때)인 라인스케이트 대여점 뒤편에서 시위를 관망하는 모습이 발견된다.

(d) 이상 18:00경까지 전○○의 행적으로 볼 때 임○○, 박○○은 간접적으로 전○○이 경찰로부터 머리를 맞거나 기타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나, 동인들도 전○○에게서 특별한 의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청에서 17:35경에 채증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부상이나 기타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임○○, 박○○의 진술만으로는 전투경찰들이 전○○에게 방패나 경찰봉으로 머리를 가격하거나 기타 폭행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또한 18:00경 이전에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망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농민 집회 18:00경 이후 전○○의 행적

(a) 서울○○경찰서 소속 ○○ 경장은 같은 날 18:18 경 문화마당 내 국가기계양대에서 국가방향으로 약 10-20 미터 지점에서 전○○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장면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였고, 당시 통인은 문화마당 6문 원쪽(1문을 볼 때) 잔디밭에서 전투경찰들이 1문을 향해 뛰어갈 때 병력을 끌어들고 기습하거나 기타 폭행을 당한 사실을 보고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b) 전국농민집회 참가자 정○○, 김○○은 18:00~18:30경 사이에 전국농민회 ○○도연맹 소속 회원 8명과 ○○도 여성농민회 회원 3-4 명과 함께 국가기계양대에서 나머지 회원들을 기다리고 있던 중 전경들이 갑자기 국회방향에서 청대로 늘어서 좌측에 있는 부대는 국가기계양대에 바짝 붙어 앞을 지나 농민집회 본무대 쪽으로 달려갔고, 전경부대가 지나간 다음에 국가기계양대 계단에서 바라보니 국가기계양대로부터 국회방향으로 약 20 내지 30미터 떨어진 곳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고 달려가 보니 가만히 누워 있어 죽은 듯한 모습을 발견하였다. 당시 통인도 해보고 목에 손을 대고 맨발이 뛰는지 확인해 보았으며, ○○도 여성농민회 장○○ 회원에게 119에 연락하도록 하고, 성령미상의 2인과 함께 전○○을 들고 1문 쪽 본무대 뒤쪽으로 옮겨놓고 가슴을 몇 번 문질러 주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 비틀거리며 일어나 도로 쪽으로 혼자 걸어갔고 전투경찰에게 맞았는지 물어보았는데 전○○이 무슨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알아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c) 전국농민집회 참가자 배○은 날이 어두워졌을 무렵 문화마당 내 매점 근처 식수대 부근에 서 있었는데 전경들이 잡차기 앞 좌우로 밀고 들어왔고, 전○○은 국기게양대에서 식수대부근으로 50미터쯤 부근에 서서 달려오는 전경들을 향해 팔을 벌리며 막았고, 성령미상의 전경은 전○○의 머리 쪽으로 방패를 내리친 것 같았는데 맞은 부위가 머리인지 가슴인지 모르겠으며, 두 번째 다시 방패로 쳐었는지, 밀쳤는지 모르겠으나, 전○○이 방패에 맞아 뒤로 벌러덩 넘어졌고, 전○○이 넘어지자 연이어 뒤따르던 전경이 방패로 다시 한번 바라찍었으며, 또 다른 전경이 뛰어가면서 진압봉으로 2-3대 때리고 넘어갔는데 넘어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전경들이 지나간 후 전○○에게 다가가 성령미상의 3인과 함께 전○○을 무대 뒤편으로 옮겼다고 진술하고 있다.

(d) 전국농민집회 참가자 임○○, 정○○, 김○○(○○○ 대학교 대학원생들)은 18:10경 이후 국기게양대에 서 있었고 그 무렵 전경들은 문화마당 내 6문 쪽 보도블럭(울타리 앞) 위에 6문 입구부터 매점까지 3-4열 가량의 향대로 서 있었는데 잡차기 ‘와’, 소리와 함께 문화마당 내로 뛰어 들어와 국기게양대 부근을 지나 1문 무대 근처로 뛰어 가는 모습을 보고, 다시 고개를 돌려 매점 쪽을 바라보았을 때 전○○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뒤 따르던 30-40정도의 병력 중 앞부분에서 방패를 든 성령미상의 전경이 지나가면서 방패로 전○○을 1회 찍는 모습을 보았고 연이어 뒤따라오던 병력 일부가 전용철이 쓰러져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전○○을 밟고 지나갔으며, 그 무리 중 고봉을 든 성령 미상의 전경 1명이 뛰어가면서 전○○을 향해 고봉을 1회 내리치는 모습을 보았으며(정○○은 전○○을 보았을 때는 매점 쪽 산책로를 통하여 종대로 길게 늘어져서 문화마당으로 들어온 병력 중 선두는 전○○을 막 지난 친 후이고, 같은 무리의 선두 바로 뒤쪽에 있던 전경 일부가 전○○을 밟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 전경들이 지나간 후 학교선배 이○○과 함께 전○○에게 다가가보니 전○○이 얼굴을 하늘 방향으로 하고 머리를 무대 쪽으로 옮겨 하여 쓰러져 있었고, 이후 몇 명의 농민들이 와서 전○○을 무대 쪽으로 옮기는 기는 것을 본 후 국기게양대로 다시 돌아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e) 전국농민집회 참가자 이○○(회사원)은 18:10경 학교 후배인 임○○과 국기게양대에서 만났는데, 임○○을 만난지 약 10여분 정도 후에 6문 입구부터

매점 옆 소로 걸까지 향대로 서 있던 병력들이 일제히 문화공원 내로 밀고 올라오기 시작하였고, 그 중 매점 앞쪽에서 향대로 서 있던 병력들이 1문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는 상황에서 병력들의 진로에 전○○이 서 있었는데 병력들이 그 분을 피해가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상황 속에서 전○○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고, 그 와중에 그 병력 후미에 있던 전경 일부가 전○○을 그냥 밟고 지나갔으며, 병력들이 완전히 지나간 후 후배 임○○ 등과 함께 전○○에게 다가가보니 전○○이 얼굴을 하늘 방향으로 하고 머리를 무대 쪽으로 하여 쓰러져 있었고, 이후 몇 분의 농민들이 와서 전○○을 무대 쪽으로 옮기는 것을 본 후 국기게양대로 다시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f) 이○○은 전국농민집회를 마치고 전○○과 함께 버스를 타고 돌아가던 중 광천에 있는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전○○은 식사를 하지 않았고, 식사를 마치고 버스에 탑승하니 버스 운전기사 이○○은 전○○이 차안에서 구토를 하였다고 말하였고, ○○면에 도착해서도 김○○와 몇 사람이 들어서 배리다시피 하여 전○○을 하차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소결

관련 자료와 위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18:00경 이후 전○○의 행적을 살펴볼 때 다소 미세한 부분에서 무자격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나 대체로 전○○은 전국농민집회 당일 18:17경을 전후하여 문화마당 내 국기게양대에서 국화방향으로 약 15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서 있던 중 매점 앞 부근에서 정렬하고 있던 진압부대가 매점 앞 쪽으로 뛰어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성령미상의 전경대원이 진행방향에 서 있던 전○○을 방패로 떠밀어 그 힘에 의해 전○○이 뒤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후두정부에 강한 충격을 받아 두부손상이 발생하고, 같은 경로로 원쪽 팔꿈치 부위 표피박탈, 좌상의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 가해 부대 조사

(1) 전○○이 18:18경을 전후해서 매점 앞 부근에서 향대대형으로 서 있던 부대에게 가해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18:10경에서 18:20경 사이에 6문 왼쪽(6문에서 1문 쪽을 바라볼 때)부터 매점 부근에 주둔한 부대의 위치 및 이동 경로 조사가 필요하다.

(2) 부대 이동경로 및 이동방향 조사

(가) ○○○지방경찰청 경비부서에서 제출한 경력이동상황의 기재내용 및 무

전기록(○○)지방경찰청 기동단장 지휘 무전망)에 의하면 18:15경 6문 원쪽부터 매점부근까지 주둔한 부대는 제1기동대 제1, 2, 3중대로 확인된다.

(+) 위 경력이동상황의 기체내용 및 제3중대 제1소대장 ○○○의 진술에 의하면 제3중대는 18:15경 6문 원편(6문에서 1문 쪽을 바라볼 때) 자전거 보관소 부근에 정렬하고 있다가 화단을 지나 문화마당으로 진입하여 6문 원쪽 난간 끝 부분에서 매점 쪽으로 제3소대, 제2소대, 제1소대 순으로 4열 형대대형으로 잡시 대열을 정비한 후 18:17경 1문 쪽으로 뛰어가 1문을 그대로 통과하여 1문 밖 원편 인도에서 대열을 정비하고 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위 경력이동상황의 기체내용과 제2중대 제1소대장 ○○○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제2중대는 18:15경 화장실 뒤 산책로에서 정렬하고 있다가 화장실 앞을 지나 난간을 넘어 문화마당으로 진입한 후 제3중대 제1소대 옆으로 가서 제1소대, 제2소대, 제3소대 순으로 3~4열 형대대형으로 잡시 대열을 정비한 후 18:17경 1문 쪽으로 뛰어가 1문 옆 원쪽 화단을 지나 1문 뒤 인도로 가서 제2중대 원쪽에서 대열을 정비하고 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제1소대장 ○○○는 2005.12.15. 제1기동대 실지조사과정에서는 위와 같이 전술하였다) 같은 달 21. 출석조사 과정에서는 화장실 앞을 지나 문화마당으로 진입하였다가 고 매점 앞 가건물 뒤 화단을 통해 문화마당에 진입하였다고 진술하나, 12. 15. 실시한 제1기동대 실지조사과정에서 다수의 2중대원들이 화장실 앞을 지나 문화마당에 진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제1중대 제1소대장 ○○○의 일부 진술, 제2소대 부관 ○○○의 진술, 정1○○격대 일부 부대원의 진술에 의하면 제1중대는 18:15경 화장실 뒤 산책로, 제2중대 원쪽(문을 바라볼 때)에서 정렬하고 있다가 화장실 앞 화단을 통해 문화마당으로 진입하여 매점 앞 부근에서 6문 원쪽(1문을 블 때)부터 제1소대, 제2소대 순으로 대열을 정렬한 후 18:17경 1문 쪽으로 뛰어가 1문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대열을 정비한 것으로 추정된다.(제1중대장은 12. 19. ○○○ 현장조사과정에서 1중대 1소대는 매점 앞을 지나 문화마당에 진입했고, 제2, 3소대는 매점 앞 가건물 뒤 화단을 통해 문화마당에 진입하여 제2 중대 3소대 원쪽(1문을 블 때)에 정렬을 한 후 1문으로 갔다고 주장하고, ○○○도 2005. 12. 15. 제1기동대 실지조사시의 진술과는 달리 같은 달 12. 21. 출석조사에서는 제1중대장과 같은 주장을 함. 그러나 제1중대 뒤에 서 있었던 정1○○ 대원들은 제1중대가 화장실 앞을 지나 매점 앞 쪽에서 정렬 했다고 진

술하고, 제1중대 옆에 정렬하고 있던 제2중대도 화장실 앞을 지나 문화마당에 진입한 것을 볼 때 제1중대가 화장실 뒤에 있는 제2중대를 지나 매점 앞 가건 물 뒤로 해서 문화마당에 진입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소결

이상의 사실에 의하면 18:17경 전후 매점 앞에서 주둔한 부대는 제1기동대 제1중대로 추정되고, 전○○이 문화공원에서 쓰러진 시각, 쓰러진 위치, 쓰러진 방향, 제1기동대장의 무전지시 내용, 쓰러질 당시 부대의 위치 및 이동경로, 매점부근에 형대로 서 있던 부대가 전○○을 쓰러지게 했다는 이○○, 임○○, 정○○, 김○○의 각 진술, 당시 기동대부대가 국기개양대를 근접해서 지나갔다는 고○○, 정○○, 김○○의 각 진술, 단3 중대 중 1개 중대는 문화마당 학장을 앞을 지나 문화마당으로 진입했다는 정1○○ 일부 부대원들의 진술, 영상 기록 등을 각 종합하면 18:16경 매점부근에서 횡대로 정렬한 1중대(1001부대)가 18:17경 전후 매점 앞에서 1문 쪽으로 뛰어가는 과정에서 문화마당 내 국가개양대 근처에 서 있는 전○○을 쓰러지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5. 흥○○ 농민 사망 관련

가. 기초사실

(1) 피해자 흥○○는 2005.11.15.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개최된 '쌀협상 국회 비준 저지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농민회 일행과 ○○마을 이장 문○(65세), 임○○(72세), 박○○(65세), 차○○(67세) 등과 함께 같은 날 08:30경 버스로 이동하여 여의도에 12:00경 도착하였다.

(2) 문화마당 행사에 참석한 후, 문화광장 길 건너편 지하차도부근 언덕에 올라가 구경을 하다가 17:00경에는 지하차도 위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건설 분양사무실 도로 건너편 문화마당6문 오른쪽 화단 넘어 언덕위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다.

(3) 흥○○와 같은 동네에 사는 박○○ 등 4명이 함께 지하차도 위 6문앞 부근에서 시위를 구경하던 중 지하차도 위 도로에서 차벽을 형성하고 있던 전경 차에 불이 나서 소화하려는 전경대와 시위대간 공방이 있었는데 시위대가 불을 끄지 못하도록 돌을 계속 던지자 이를 제어하기 위하여 17:00경 경찰에서는 6문 쪽으로 경력을 투입하였다.

(4) 물려오는 경력을 피하여 흥○○와 박○○은 1문을 바라보고 왼쪽으로,

임○○와 차○○은 오른쪽으로 달아났는데, 6문 화단 자전거도로 부근에서 잡은 마을 박○○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흥○○를 발견하였다.

(5) 박○○이 보니 흥○○가 얼굴에 유혈이 낭자하고 품이 원전히 풀려있어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려고 하다가 본인도 생명불상 경찰에 의해 오른쪽 어깨를 1회 가격을 당하여 힘이 없어 부축하지 못하였고, 성명불상 시위대 4명이 1문쪽 무대 쪽으로 도망갔는 데 피해자가 빨리 오지 못해 뒤돌아보니 피해자가 경찰 방패 등에 의하여 가격을 당한 후 머리를 무대 쪽으로 하여 엎어져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는데 피해자 얼굴에 유혈이 낭자하였고, 완전히 품이 풀린 상태였고, 119 구급차에 등승 후 성애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피해자가 생뚱을 써서 간호사가 치웠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는 병실에 도착하였다.

(6) 위 병원에서 흥○○는 안면부출혈 및 열상(이마 정중앙부위 4cm열상, 우측 광대뼈와 코부위 찰과상, 인중부위 5cm관통 열상), 경부 통증 및 구토 등의 증상을 보여 이와 관련한 치료를 받았고, 사지마비 및 폐렴 증상을 보여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7) 피해자 흥○○는 2005.11.18. 전북 ○○에 소재한 ○○대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병명은 경추 척3~6번 척수손상, 경추 척6번 후궁골절, 경막 열상*으로 경추(목뼈)가 손상되면서 뇌와 신체를 연결하는 척수가 다쳐 사지마비상태로 진행되었고, 2005.11.21. 경추 제3/4번 추간판 제거술 및 용합술, 경추 제3,4,5번 후궁 성형술을 시행하였으나 다리를 거의 쓰지 못하고 두 팔도 자유롭지 못한 페다. 페에 물까지 치는 등 상태가 나빠져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하는 도중 2005.12.18. 00:35 사망하였고, 유해는 2005.12.20. 김제 ○○○장례식장으로 옮겨 안치하고 있다.

나. 사망원인

(1) ○○대학교 법의학과 이○교수 등은 2005.12.19. 11:00 ○○대병원에서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가 추천한 ○○대병원 박○○, 박○○ 변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사인규명을 위한 부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부검일로부터 약 2주 후에 밝혀질 예정이다.

(2) 현재까지는 경추손상으로 인한 폐렴에 따른 폐렴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경추손상의 원인조사

(1) 진정인의 주장
경찰이 방패로 목 뒷부분을 가격하여 경추에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진정인의 주장

방패에 가격 당하였거나 넘어져서 부상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조사 결과

(가) 박○○(65세, ○○시 ○○면 상리)은 2005.11.15. 17:00경 국화방향에서 불 때 포스코 공장 부근 도로에서 6문으로 공격해온 경찰을 피하기 위해 원쪽으로 도망갔는데 피해자가 빨리 오지 못해 뒤돌아보니 피해자가 경찰 방패 등에 의하여 가격을 당한 후 머리를 무대 쪽으로 하여 엎어져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는데 피해자 얼굴에 유혈이 낭자하였고, 완전히 품이 풀린 상태였고, 119 구급차에 등승 후 성애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피해자가 생뚱을 써서 간호사가 치웠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는 병실에 도착하였다.

(나) 피해자 아들 흥○○(39세)는 2005.12.4.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여서 어떻게 맞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했으나 이미가 짚어진 것은(경찰이) 방패로 때려서 그렇게 뛰다”며 “방패와 곤봉으로 뒷목과 머리도 맞았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소방서 ○○파출소 2005.11.15. ‘구급활동일지’의 환자상태 기록에 의하면 이미부위를 방패 등으로 맞아서 열상 및 출혈, 고밀부근 열상, 구토증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 ○○○구 ○○병원 의사 김○○의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내원 당시 안면부 이미 정중부위 4cm 열상, 우측 광대뼈와 코부위 찰과상, 인중부위 5cm의 관통열상이 있었고 경부 및 우측 견갑부 통증, 구토증상을 보였다.

(마) ○○병원 의사 지○○의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응급실에 내원시 익식저하 증상과 사지부분마비(상지, 하지)에 대한 평가(MRI)에서 척수순상이 있어 수술적 치료등이 요구된다고 하였고, 병명은 뇌진탕, 경수 순상(척수 순상), 요추압박 골절(Odp 추정), 안면부 좌상, 다발성 타박으로 접희 중부상으로 인한 결과라고 소견하였다.

(마) 소결

이러한 진술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경찰의 방패 등 외부충격에 의하여 경추손상, 안면부 부상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 기해 부대 조사

(1) 2005.11.15. 16:50부터 17:20까지 ○○○ 문화광장 6문 앞 경력배치상황은 국회에서 문화과장 6문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 공사장 원쪽 곡각지 부근부터 정100(○○○, ○○, ○○중대)이 있었고, 정100 오른쪽에 국100(○대부대장)이 위치해 있었으며 그 앞 6문 쪽으로 단3 소속 1중대, 2중대가 위치해 있었고 포스코 공사장 부근 지하차도 위 도로에 설치한 정103 차벽부분에 불이 난 후 17:00경 포스코 공사장 분양사무실 부근에서 문화광장 6문 오른쪽으로 이동(공격)한 격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2) 당시 부대 이동 경로

(가) ○○○지방경찰청에서 제출한 6문 부분을 녹화한 CC-TV 녹화 테이프에 의하면 17:03 차벽으로 설치된 전경대 버스에 불이 불어 이를 끄려고 경력이 불난 지점으로 이동하였고, 동일 부대가 17:06경 국회에서 문화과장 6문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공사장 원쪽 곡각지 부근부터 정렬 후 6문 쪽으로 공격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나) ○○○지방경찰청 경비계에서 제출한 16:50~17:20간 경력이동사항, 경비계 담당자 전화통화보고서에 의하면 6문 쪽으로 공격한 경력이 정100과 단3이며 국100은 6문 쪽으로 이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17:00경 정100은 6문 오른쪽으로, 단3은 6문 원쪽으로 공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목격자 박○○, 임○○, 차○○은 피해자가 공격당한 장소가 6문 화단 차전지 도로 부근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라) 17:02:03에 기동단장 송신기록을 보면 “아, 3대부대장 가서 빨리 불꺼, 과감하게 해, 웬찮아. 과감하게”라고 송신하였고, 17:06:39 기동단장 송신기록에 “아, 단경비과장(제1기동대 1.2.3중대 지휘)자. 저 문화마당 6문쪽에 상황이 있는 모양인데 3기동대장 뒤로 가봐, 한번 치고 나갈 준비해“라는 무전기록이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해자가 부상당한 17:00경 국회에서 문화광장 6문을 바라보는 방향에서 ○○○ 공사장 원쪽 곡각지 부근에서 6문 오른쪽으로 공격한 경력은 정103(31, 32, 37중대) 격대로 추정된다.

6. 결론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가. 2005.11.15 ○○○에서 있었던 쌀상안 비준저지 농민집회는 경찰 측에서는 부상자 218명(중상자 33명 포함), 버스 전소 등 9,500여만 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농민 측에서도 다수자(경찰 측 주장 113명, 농민 측 주장 600명) 디치고 그중에서 2명이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 했는바, 이는 위 농민집회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폭력이 동원된 집회였으며 경찰 측에서는 경찰장구의 사용한계, 시위진압의 한계를 넘어선 과격한 진압을 함으로써 빚어진 결과로 판단된다.

나. 시위 주체자들이 물리력을 동원한 폭력적 시위를 행할 경우 경찰에서도 폄연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한 방어 및 진압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결과 이번 집회에서 발생했던 것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으므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의 희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화적 시위 관행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 이번 집회과정에서 발생한 농민 측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경찰에서 총63명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등 사법적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 관할을 넘어서는 사항이므로 경찰력에 의한 인권침해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과잉진압 및 폭력행사 관련
우리 위원회는 2005.2.14. ‘부안 핵폐기장설치 반대집회 신체의 자유 등 침해 진정사건(03진인5400, 03진인6412, 04진인6, 04진인2696 병합사건)’과 관련하여 시위 중 방패 등 경찰장구의 안전사용에 대하여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있어 경찰장구 사용 관련 지침이나 자체규정에 위배하여 방패로 안면이나 머리 부분을 가격하거나, 날을 세워서 가격하거나, 단순가담자, 저항을 포기하는 자들에게도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여성이나 노약자들에 대한 보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 경찰장구 사용 관련 제한 지침에 위반하여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2005.11.15. 전국농민대회와 관련하여 과잉진압에 책임이 있는 ○○지방경찰청장 ○○○, 같은 청 차장 ○○○,

같은 청 경비부장 ○○○을 각 청고하고, 같은 청 전 기동단장 ○○○를 정계하고, 각 격대장, 중대장 등 지휘체입자, 실제 가혹행위를 행한 부대원들에 대해서는 경찰청 자체 조사 후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2) 전○○ 농민 사망 관련
피해자의 사인과 그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제17조동대 제1 중대가 문화마당 매점 쪽에서 1문 쪽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위 중대소속 성명미상의 대원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나 행위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개시할 것을 의뢰하기로 한다.

(3) 홍○○ 농민 사망 관련
피해자의 사인과 그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제3기동대 청1 ○○격대가 사건당일 17:00경 국회 쪽에서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6문 오른쪽 화단 쪽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위 격대 소속 성명미상의 대원에 의한 폭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나 행위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개시할 것을 의뢰하기로 한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2. 26.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조영황 위원 최영애 위원 김호준 위원 정강자
위원 김만희 위원 나천수 위원 이해학 위원 정인섭
위원 최금수 위원 신혜수 위원 원형은

③ 2006.11.27. 자 06진인1592결정[과잉진압에 의한 인권침해]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이 미하여 집회 일괄 금지 통고한 것과 과잉진압 및 폭력을 행사한 것은 진정인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되어 유사사례가 없도록 제발령지내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천고하고 하○○노조원 사망과 관련하여 검찰총장에게 수사개시를 의뢰하기로 한 사례

【결정 요지】

- [1]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진정인이 이후 개최하는 모든 집회에서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할 개연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러한 이유와 집시법상 잔여집회 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 일괄 금지 통고한 것과 시위를 과잉진압하고 폭력행사를 한 것은 진정인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 [2] 하○○ 노조원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특수기동대가 시위대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사망원인 및 행위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3] 위 [1], [2]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검찰총장에게 경찰의 집회·시위 강제해산 과정에서 사망한 故하○○의 사망원인 등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것을 의뢰하고, 경찰청장에게 민주노총 ○○시험의회의 2006. 7. 16자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남부경찰서장을 징계하고 ○○지방경찰청 특수기동대장 우○○를 경고조치할 것과 집회 일괄 금지 통고 및 과잉진압 등에 의해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함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12조, 제18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경찰정책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6601호)」 제3조, 「경찰장비 관리규칙」 제91조

【진정인】 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